

고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51
----------	------

제출년월일 : 2009. 3. 3.
제출자 : 고성군수

1. 개정이유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한 위원수의 상한을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는 등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보건복지가족부령 제73호, 2008.11.5 공포·시행)됨에 따라 위원수의 상한선을 확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수를 조정함 (안 제9조제3항, 제4항)
 - 10명 이상 20명 이하 ⇒ 10명 이상 30명 이하
- 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유급간사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다. 자연스럽지 아니한 표현을 알기 쉬운 문맥으로 바꿈

3. 참고사항

- 가.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2009-39호(2009. 01. 06 ~ 2009. 01. 28)
 - 의견제출사항 : 없음
- 나. 관련법령 및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및 제1조의4
- 다.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라. 규제심사 : 해당없음

4. 본문

- 덧붙임과 같음

고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규칙」 제1조의3 및 제1조의4에 따른 고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 후단 중 “두며 기능은 【별표2】와 같다.”를 “둔다”로 한다.

제2조(기능) ① 고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 또는 건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 시행 ·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 등의 연계 · 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제3조제1항과 제4항 중 “10인 이상 20인”을 “10명 이상 30명”으로 하고, 제2항과 제5항 중 “각호의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제2항 중 “군수, 주민생활과장”을 “부군수, 주민생활과장”으로 하고, 제3항 중 “각1인”을 각 1명으로 한다.

제4조 중 “제3조제2항 내지 제3조제5항에”를 “제3조제2항부터 제2조제5항 까지에”로 한다.

제6조 중 “잔여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간사)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둔다.

이 경우 대표협의체에 상근의 유급간사를 둘 수 있으며, 대표협의체의 유급간사는 실무협의체의 간사를 겸임한다.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4조 중 “예산의 범위 내에서”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로 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3 내지 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u>제2조(기능) 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의 주요세부 기능은 【별표1】과 같다.</u></p> <p>② (생략)</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두며 기능은 【별표2】와 같다.</p>	<p><u>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및 제1조의4에 따른 고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u>제2조(기능) ① 고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또는 건의하거나 군수의 지문에 응한다.</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u> <u>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 등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u> <u>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u> <u>4. 군수가 지역복지시체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u>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u> <p>② (현행과 같음)</p> <p>-----</p> <p>-----</p> <p>-----</p> <p>-----</p> <p>-----</p> <p>-----</p> <p>둔다.</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을 포함하여 <u>10인 이상 20인</u>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u>10명 이상 30명</u> ----- -----.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제2항 <u>각 호의1에</u>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u>군수, 주민생활과장, 보건소장,</u> 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 <u>각 호의 어느 하나</u> ----- ----- <u>부군수, 주민생활과장</u> ----- -----.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위원(당연직위원을 포함한다(과 위 촉직 위원 <u>각1인</u>)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 할 수 있다.	----- <u>각 1명</u> ----- -----.
④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 을 포함하여 <u>10인 이상 20인</u>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u>10명 이상 30명</u> ----- -----.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동법 시행규칙」 제1 조의4제2항 <u>각호의 1에</u>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 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총 팔지원담당주사, 보건행정담당주사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 <u>각 호의 어느 하나</u> ----- -----.
⑥ (생략)	----- ----- ⑥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명단 공개)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u>제3조제2항 내지 제3조제5항에</u> 의한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은 공보와 인 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u>제3조제2항부터 제2조제5항까지에</u> ----- -----.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 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 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u>잔여기간</u> 으로 한다.	----- ----- ----- ----- <u>남은 기간</u>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간사)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이 경우 주민생활과 소속공무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p> <p>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p>	<p>제8조(간사)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둔다. 이 경우 대표협의체에 상근의 유급간사를 둘 수 있으며, 대표협의체의 유급간사는 실무 협의체의 간사를 겸임한다.</p> <p>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p>
<p>제14조(회의수당) 각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 예산의 범위 안에서 ----- ----- ----- -----</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1】</p> <p>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주요 세부 기능(제2조제1항 관련)</p> <p>1.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심의·건의하거나 자문에 응함 가. 관할지역 안의 사회복지사업의 중요사항 (1) 중요사항: 군수가 관할지역 안의 지역사회복지와 관련, 지역복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실무협의체로부터 안전으로 상정된 제반사항 나. 다음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변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1) 지역사회복지계획 내용에 관한 사항 (가) 복지수요의 측정 및 전망에 관한 사항 (나)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에 대한 장·단기 공급 대책에 관한 사항 (다) 인력·조직 및 재정 등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마)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제공 방안에 관한 사항 (바) 지역사회복지 관련 통계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항 (사) 지역사회복지계획 추진과정에 대한 주민참여촉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복지기관·단체 복지자원 조사에 관한 사항 (나) 지역주민,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기관·단체, 전문가의 의견수렴 사항 (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추진과정에 있어 주민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 (3) 기타 지역사회 특성상 계획수립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 (4)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계획 관련, 실무분과로부터 실무 협의체를 거쳐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2. 다음 각 호의 사회복지-보건의료서비스 연계·협력 강화 가.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 연계의 세부지침에 관한 사항 나. 지역사회복지계획과 지역보건의료계획간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다.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 검토·보호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기타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 관련, 실무분과로부터 실무협의체를 거쳐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3. 그 밖의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 또는 협의체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p>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 2】 실무협의체의 주요 세부 기능(제2조제3항 관련)</p> <p>1.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무협의하여 대표협의체 업무 수행을 지원함 가. 관할지역 안의 사회복지사업의 중요사항 (1) 중요사항: 대표협의체에서 심의할 사항과 동일 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변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1) 지역복지계획 내용에 관한 사항 (가) 복지수요의 측정 및 전망에 관한 사항 (나)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에 대한 장단기 공급대책에 관한 사항 (다) 인력·조직 및 재정 등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마)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제공방안에 관한 사항 (바) 지역사회복지 관련 통계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항 (사) 지역복지계획 추진과정에 대한 주민참여촉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복지기관·단체 복지자원 조사에 관한 사항 (나) 지역주민,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기관·단체, 전문가의 의견수렴 사항 (다) 지역복지계획 추진과정에 있어 주민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계획 관련, 실무분과로부터 실무 협의를 요구하는 사항 (4) 기타 군수 또는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지역사회 특성 상 계획수립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 다.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 연계·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1)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 연계의 세부지침에 관한 사항 (2) 지역복지계획과 지역보건의료계획간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라.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 검토·보호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기타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 관련, 실무분과로부터 실무 협의를 요구하는 사항 마. 가~라 항목에 관한 실무분과간 연계 및 조정 바. 가~라 항목에 관한 협의체에 심의·건의할 사항 검토 및 안건 상정 (1) 별도의 실무분과를 구성한 경우 사전 실무분과에서 분야별 안건의 검토 실시 사. 그 밖의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실무 협의체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p>	<u><삭 제></u>